
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설명자료

양형위원회

1. 개요

- 의견조회 및 공개 대상인 ‘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안’의 주요 내용 및 검토사항 등을 소개함으로써,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
- 수정 배경
 - 현재 마약범죄 양형기준은 2015. 4. 13. 수정을 거쳐 2015. 5. 15.부터 수정된 양형기준이 시행되고 있음
 - 법률 개정에 따른 설정 범위 및 유형의 정의 수정 필요
 - 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’ (다음부터 ‘마약류관리법’으로 약칭)이 2018. 3. 13. 개정(2018. 9. 14. 시행)되어 종전 임시마약류(임시마약, 임시대마, 임시향정신성의약품)를 1군 임시마약류와 2군 임시마약류로 구분하고 그 위해성에 따라 처벌 조항을 정비함
 - 대량범의 처벌 규정인 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’ (다음부터 ‘특정범죄가중법’으로 약칭) 제11조 제2항 제1호가 2016. 1. 6. 개정·시행되어 소지·소유·재배·사용·수출입·제조 등을 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‘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’에서 ‘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’으로 법정형이 낮아짐
 - 특정범죄가중법 개정 및 유형의 정의 수정으로, 대량범의 경우 법정형이 변동되어 권고 형량범위 수정 필요
- 수정 절차

- 2019. 6. 10. 제95차 양형위원 회의에서 마약범죄를 양형기준 수정 대상 범죄로 의결
- 2020. 7. 13. 제103차 양형위원 회의에서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확정·공개
- 2020. 7. 17.~2020. 8. 17.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행정예고를 위한 홈페이지 공개
- 2020. 9. 14. 접수 의견 검토 및 최종 양형기준 의결

2. 법률 변경 내용

가. 마약류관리법

- 2018. 3. 13. 개정, 2018. 9. 14. 시행
- 아래 표에는 같은 조항 내에서도 변경된 부분이면서 설정 범위와 관련된 부분만 표시(이하 같음)

개정 전	개정 후
<p>제5조의2(임시마약류 지정 등)</p> <p>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가 아닌 물질·약물·제제·제품 등(이하 이 조에서 "물질등"이라 한다) 중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·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등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.</p> <p>1. 「약사법」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</p>	<p>제5조의2(임시마약류 지정 등)</p> <p>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가 아닌 물질·약물·제제·제품 등(이하 이 조에서 "물질등"이라 한다) 중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·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등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다. <u>이 경우 임시마약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한다.</u></p> <p><u>1. 1군 임시마약류: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·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서 의존성을</u></p>

<p>의약품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의약품</p> <p>2. 「약사법」 제34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임상시험용 의약품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 신 설 ></p>	<p><u>유발하는 등 신체적·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</u></p> <p><u>2. 2군 임시마약류: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·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</u></p> <p>⑤ <u>누구든지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</u></p> <p><u>1. 재배·추출·제조·수출입하거나</u> <u>그러할 목적으로 소지·소유</u></p> <p><u>2. 매매·매매의</u> <u>알선·수수·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·소유</u></p> <p><u>3. 소지·소유·사용·운반·관리·투약·보관</u></p> <p><u>4. 1군 또는 2군 임시마약류와 관련된 금지행위를 하기 위한</u> <u>장소·시설·장비·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</u></p>
<p>제58조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</p> <p>1. 제3조(제5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)제2호·제3호, 제4조제1항, 제5조의2제4항(예고임시마약류의 경우 또는 제5조의2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장에서 같다),</p>	<p>제58조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</p> <p>1. 제3조제2호·제3호, 제4조제1항,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·제조·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·소유한 자</p>

<p>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이나 임시마약을 수출입·제조·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·소유한 자</p> <p>7.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이나 임시마약을 수수·조제·투약·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·수수·조제·투약·제공한 자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 신 설 ></p>	<p>7.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·조제·투약·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·수수·조제·투약·제공한 자</p> <p>8.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</p>
<p>제59조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</p> <p>9.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마약이나 임시마약을 소지·소유·관리 또는 수수하거나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한외마약을 제조한 자</p> <p>11.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대마나 임시대마의 수출·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대마초나 임시대마초를 재배한 자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 신 설 ></p>	<p>제59조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</p> <p>9.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소지·소유·관리 또는 수수하거나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한외마약을 제조한 자</p> <p>11.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의 수출·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한 자</p> <p>13.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</p>

<p>제60조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 신 설 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 신 설 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5조의2제5항제3호를 위반한 자</p> <p>제60조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/p> <p>5. <u>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</u>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</p> <p>6. <u>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</u>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</p>
<p>제61조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/p> <p>6.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대마나 임시대마를 재배·소지·소유·수수·운반·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 신 설 ></p>	<p>제61조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/p> <p>6.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재배·소지·소유·수수·운반·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</p> <p>8. <u>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</u> 제5조의2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</p>

● 개정 요지

- 개정 전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시마약류(임시마약, 임시대마, 임시향정신성의약품)를 지정할 수 있고, 그 취급·처벌은 각각 마약, 대마, 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·처벌을 준용함. 개정법에서는 임시마약류를 임시마약, 임시대마,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구분하지 않고, 1군 임시마약류와 2군 임시마약류로만 구분(구분 기준은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·마약류와의 유사성 등)하고, 처벌 규정도 위해성에 따라 정비함

- 1군 임시마약류는 향정 (가)목, 2군 임시마약류는 향정 (라)목과 각 처벌 규정의 법정형이 유사함

나. 특정범죄가중법

- 2016. 1. 6. 개정, 시행

개정 전	개정 후
<p>제11조(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)</p> <p>① 「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·제7호에 규정된 죄(매매, 수수 및 교부에 관한 죄와 매매목적, 매매알선목적 또는 수수목적의 소지·소유에 관한 죄는 제외한다)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</p> <p>② 「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0조에 규정된 죄(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죄만 해당한다)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</p>	<p>제11조(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)</p> <p>① 「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·제7호에 규정된 죄(매매, 수수 및 제공에 관한 죄와 매매목적, 매매알선목적 또는 수수목적의 소지·소유에 관한 죄는 제외한다)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.</p> <p>1. <u>수출입·제조·소지·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</u></p> <p>2. <u>수출입·제조·소지·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</u></p> <p>② 「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0조에 규정된 죄(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죄만 해당한다)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</p>

<p>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.</p> <p>1. 소지·소유·재배·사용·수출입·제조 등을 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</p> <p>2. 소지·소유·재배·사용·수출입·제조 등을 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</p>	<p>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.</p> <p>1. 소지·소유·재배·사용·수출입·제조 등을 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</p> <p>2. 소지·소유·재배·사용·수출입·제조 등을 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</p>
--	---

● 개정 요지

-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1항 : 기본법과 동일한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한 규정은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어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(헌법재판소 2014. 4. 24. 선고 2011헌바2 결정)을 함에 따라 마약류의 가액(500만 원 이상 5,000만 원 미만, 5,000만 원 이상)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는 규정으로 변경함
-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2항 제1호 : 구성요건은 종전과 동일하나 법정형이 ‘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’ 에서 ‘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’ 으로 낮아짐

3.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의 주요내용

가. 설정 범위 및 유형의 정의 수정

1) 마약류관리법 개정 반영

■ 수정 취지

- 임신마약류(임시마약, 임시대마, 임시향정신성의약품)를 규정하고 있는 부분 삭제
- 1군 임신마약류와 2군 임신마약류 취급 관련 처벌 규정을 설정 범위에 포함하되, 법정형의 동일·유사성에 따라 1군 임신마약류는 향정 (가)목, 2군 임신마약류는 향정 (라)목의 각 처벌 규정과 같이 유형을 분류함

■ 설정 범위 수정

- 설정 범위 중 수정 부분은 아래와 같음: 삭제 부분은 삭선 및 파란색, 추가 부분은 강조 및 붉은색 표시

마약범죄의 양형기준은 (화학물질관리법 관련 부분 생략),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내지 ~~제7호~~**제8호**, 제2항, 제5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, **제13호**, 제2항, 제6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, **제5호**, **제6호**, 제2항, 제6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, **제8호**, 제2항, (특정범죄가중법 관련 부분 생략)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성인(19세 이상)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.

■ 유형의 정의 수정

- 유형의 정의 중 수정 부분은 아래와 같음: 삭제 부분은 삭선, 추가 부분은 굵은 글씨와 밑줄 추가

01¹ 투약 · 단순소지 등

나. 제2유형(대마, 향정 라.목 및 마.목 등)

구성요건	적용법조	법정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대마 등 ● 대마, <u>임시대마</u> 재배 · 소지 · 소유 · 운반 · 보관 · 사용 ● 대마 · 대마초 종자 꺾질 흡연 · 섭취/같은 목적 대마 · 대마초 종자 · 대마초 종자 꺾질 소지 ● 대마 사용/장소 · 시설 · 장비 · 자금 · 운반수단 제공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6호 ●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4호 ●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1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●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●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<u>2군 임시마약</u> ● <u>소지 · 소유 · 사용 · 운반 · 관리 · 투약 · 보관</u> ● <u>사용/장소 · 시설 · 장비 · 자금 · 운반수단 제공</u>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<u>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8호</u>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<u>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</u>

라. 제4유형(마약, 향정 가.목 등)

구성요건	적용법조	법정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<u>마약 등</u> ● <u>마약, 임시마약</u> 소지 · 소유 · 관리 · 수수 ● 마약 사용/장소 · 시설 · 장비 · 자금 · 운반수단 제공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9호 ●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1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1년 이상 징역 ●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<u>1군 임시마약</u> ● <u>소지 · 소유 · 사용 · 운반 · 관리 · 투약 · 보관</u> ● <u>사용/장소 · 시설 · 장비 · 자금 · 운반수단 제공</u>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<u>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13호</u> ● <u>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5호</u>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<u>1년 이상 징역</u> ● <u>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</u>

02¹ 매매 · 알선 등

가. 제1유형(환각물질, 향정 라.목 등)

구성요건	적용법조	법정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대마 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대마, <u>임시대마</u> 수수 ● 대마초 종자 · 대마초 종자 껍질 매매 · 알선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6호 ●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4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●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<u>2군 임시마약</u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<u>매매 · 알선 · 수수 · 제공/같은 목적 소지 · 소유</u>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<u>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8호</u>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<u>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</u>

다. 제3유형(마약, 향정 가.목 등)

구성요건	적용법조	법정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<u>마약, 임시마약</u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매매 · 알선/같은 목적 소지 · 소유 ※ 상습범은 4유형에 포섭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<u>1군 임시마약</u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<u>매매 · 알선 · 수수 · 제공/같은 목적 소지 · 소유</u>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<u>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8호</u>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<u>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</u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, <u>임시대마약</u> · 향정, <u>임시향정 임시마약류</u> 범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매매 · 수수 · 조제 · 투약 · 제공 ※ 상습범은 4유형에 포섭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7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

라. 제4유형(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)

구성요건	적용법조	법정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마약, 향정 가.목, 1군 임시마약 ● 영리 목적 매매 · 알선 · 수수 등/미성년자에 대한 매매 · 수수 · 조제 · 투약 · 제공 ● 상습 매매 · 알선 · 수수 등/미성년자에 대한 매매 · 수수 · 조제 · 투약 · 제공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2항 ●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2항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사형 ·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● 사형 ·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

03¹ 수출입 · 제조 등

가. 제1유형(향정 라.목 등)

구성요건	적용법조	법정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대마초 ● 대마, 임시대마의 수출 · 매매 · 제조 목적 대마초, 임시대마초 재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11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1년 이상 징역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2군 임시마약 ● 수출입 · 제조/같은 목적 소지 · 소유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6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

다. 제3유형(마약, 향정 가.목 및 나.목 등)

구성요건	적용법조	법정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마약, 임시마약 ● 수출입 · 제조/같은 목적 소지 · 소유 ※ 상습범은 4유형에 포섭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1군 임시마약 ● 수출입 · 제조/같은 목적 소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

구성요건	적용법조	법정형
지 · 소유	조 제1항 제6호	

라. 제4유형(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)

구성요건	적용법조	법정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마약, 향정 가.목, 나.목, 대마, 마약 및 향정 원료물질, 1군 입시마약 ● 영리 목적 수출입 · 제조 등 ● 상습 수출입 · 제조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2항 ●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2항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사형 ·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● 사형 ·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

2) 특정범죄가중법 개정 반영

▣ 수정 취지

- 기존 양형기준 [유형의 정의] 중 적용법조에서 ‘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1항’ 이 아닌 ‘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, 제6호, 제7호’ 를 인용하고 있는 것은,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1항에 대한 위헌결정(헌법재판소 2014. 4. 24. 선고 2011헌바2 결정) 이후 그 위헌결정 취지에 따른 법률 개정 전에 마약범죄 양형기준이 수정되었기 때문으로 보임: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1항이 위헌결정 취지를 받아들여 개정이 되었으므로 적용법조에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1항을 명기함
- 한편, 기존 제4유형 대량범의 양형기준은 마약류 가액을 기준으로 유형 분류와 권고 형량범위를 달리하면서, ①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~4, 6, 7호의 경우 ㉠ 500만 원 이상 5,000만 원 미만 구간, ㉡ 5,000만 원 이상으로 구분하고, ② 마약류관리법 제59

조 제1항, 제2항, 제60조 제1항, 제2항의 경우 ㉠ 500만 원 이상 3,000만 원 미만 구간, ㉡ 3,000만 원 이상 5,000만 원 미만 구간, ㉢ 5,000만 원 이상 구간 등 3개 구간으로 구분함

-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3,000만 원이라는 기준을 폐지하고 ㉠ 500만 원 이상 5,000만 원 미만 구간, ㉡ 5,000만 원 이상으로 유형 분류 기준을 일원화함

- 개정된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2항은 ㉠ 500만 원 이상 5,000만 원 미만 구간, ㉡ 5,000만 원 이상 구간 등 2개 구간으로 구분하였으므로 개정 취지를 존중하고, 양형기준의 일관성과 명확성을 높임
- 종전의 유형 분류 기준을 유지할 경우 법정형과 유형 분류가 불일치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함. 예를 들어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범죄(마약류 가액이 500만 원 이상 5,000만 원 미만)의 경우 법정형이 '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'인데 종전의 유형 분류 기준에 의하면, 3,000만 원 미만인 경우 소유형 1로, 3,000만 원 이상 5,000만 원 미만인 경우 소유형2로 분류되고 그 결과 소유형2에 속하는 다른 범죄인 마약류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2호(법정형이 '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')와 법정형에 현저한 차이 발생

■ 설정 범위 수정

- 설정 범위 중 수정 부분은 아래와 같음: 삭제 부분은 삭선 및 파란색, 추가 부분은 강조 및 붉은색 표시

마약범죄의 양형기준은 (화학물질관리법 관련 부분, 마약류관리법 관련 부분 생략),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~~제2항 제1호~~, 제2호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성인(19세 이상)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.

■ 유형의 정의 수정

- 유형의 정의 중 수정 부분은 아래와 같음: 삭제 부분은 삭선, 추가 부분은 굵은 글씨와 밑줄 추가

04¹ 대량범

가. 제1유형

구성요건	적용법조	법정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, 제2항, 제60조 제1항, 제2항의 마약, 향정에 관한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만 원 이상 3,000만 원 5,000만 원 미만(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2항 제2호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2항 제2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

나. 제2유형

구성요건	적용법조	법정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, 제2항, 제60조 제1항, 제2항의 마약, 향정에 관한 죄로서 마약류 가액 3,000만 원 이상 5,000만 원 미만 (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2항 제2호) 5,000만 원 이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2항 제2호 제1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무기 또는 3년 7년 이상 징역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, 제6호, 제7호의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만 원 이상 5,000만 원 미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, 제6호, 제7호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1항 제2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무기 또는 5년 7년 이상 징역

다. 제3유형

구성요건	적용법조	법정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, 제2항, 제60조 제1항, 제2항의 마약, 향정에 관한 죄로서 마약류 가액 5,000만 원 이상(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2항 제1호) ■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, 제6호, 제7호의 죄로서 마약류 가액 5,000만 원 이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2항 제1호 ●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, 제6호, 제7호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1항 제1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● 무기 또는 5년 10년 이상 징역

나. 권고 형량범위 수정

1) 대유형 1~3

- ▣ 종전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유지함

2) 대유형 4 대량범

- ▣ 제1유형, 제3유형: 종전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유지함

- ▣ 제2유형: 권고 형량범위 상향

- 법률 개정과 유형 분류 수정에 따라 법정형이 변동(법정형에서 유기징역 하한이 3년 또는 5년에서 7년으로 상향)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 형량범위 수정

- 감경 영역 하한은 변경된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하한인 징역 3년 6월로 상향
- 법정형 상향 고려하여 기본, 가중 영역의 상한을 각각 1년씩 상향

유형	구분	감경	기본	가중
----	----	----	----	----

유형	구분	감경	기본	가중
1	제1유형	2년 - 4년	3년 - 6년	5년 - 8년
2	제2유형	3년6월 - 6년 (중전: 3년-6년)	5년 - 9년 (중전: 5년-8년)	7년 - 11년 (중전: 7년-10년)
3	제3유형	6년 - 9년	8년 - 11년	10년 - 14년

다.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 중 ‘집행유예’ 를 ‘금고형의 집행유예’ 로 변경

▣ 변경 취지

- 2018년부터 벌금형의 집행유예 제도가 도입·시행된 이상 현행 마약범죄의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에서 사용하고 있는 ‘집행유예’ 라는 용어를 ‘금고형의 집행유예’ 로 수정하여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포함되는 것으로 오인될 여지를 차단함

▣ 변경된 양형인자

- 특별가중요소 중 행위자/기타 인자인 ‘동종 전과(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)’ 을 동종 전과(3년 이내 **금고형의** 집행유예 이상)’ 으로 변경
- 일반가중요소 중 행위자/기타 인자인 ‘동종 전과(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) 또는 이종 누범’ 을 ‘동종 전과(3년 초과 10년 이내 **금고형의** 집행유예 이상) 또는 이종 누범’ 으로 변경

▣ 변경된 집행유예 기준 사유

-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 중 ‘동종 전과(5년 이내의,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)’ 을 ‘동종 전과(5년 이내의, **금고형의**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)’ 로 변경
- 부정적 일반 참작 사유 중 ‘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’ 를

‘2회 이상 **금고형의** 집행유예 이상 전과’ 로 변경

- 긍정적 일반 참작 사유 중 ‘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’ 을 ‘**금고형의**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’ 로 변경